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가합743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길중

可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결 2019. 8. 29.

판결 선고 2019.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91,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1. 10.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0.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1/2 지분) 및 D(1/2 지분, 원고의 남동생이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E(원고 및 D의 아버지이다),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위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11. 25.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64,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8. 16. D로부터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 5. F조합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100,840원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0,282,370원의 합계 580,383,210원(=300,100,840원 + 280,282,37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이하 위 변제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마. 원고의 이 사건 변제에 따라 위 나. 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580,383,21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는 민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 E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민법 제481조에 따라 위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 F조합을 대위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또 다른 물상보증인인 D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이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1)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위 변제금 580,383,210원의 1/2 상당액(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담보부동산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인 290,191,605원(= 580,383,210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아버지인 채무자 E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변제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E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채무자 E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등 무익한 분쟁이 반복되므로, 원고는 E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E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I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018. 11.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3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 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변제에 사용한 금원의 출처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채무자 E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일부로 이 사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원고로서, 설령 원고의 위 대출채무 변제 불이행으로 E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E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제341조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위 대출채무 변제의 최종적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E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무자이자 원고의 아버지라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 E이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의 대출채무 부담으로 이 사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채무자 E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위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자대위가 허용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0,191,605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박상수, 판사 서지혜

1)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1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